

충청북도중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충청북도중평출장소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중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기채, 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상권보상비, 공업용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공업용지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기채이자, 정산금, 이주대책 소요사업비, 기타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이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년 5월 25일

제안자 : 김춘식의원외 5인

1. 수정이유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수정

2. 수정주요골자

- "지장물" → "지상권" (안 제3조의 조문중 자구수정)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3조 조문중 "지장물" 을 "지상권" 으로 한다.